

부산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4552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45527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소18279 판결

###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미경

피고, 항소인B

변론 종결 2021. 10. 29.

판결 선고 2021. 12. 24.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2. 4. 선고 2019가소18279 판결

###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77,4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1. 4.부터 2019. 6. 22.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부산시 남구 C 소재 'D'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2.경 피고와 사이에 기술교육계약(이하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제4조[교육비 납부 및 지원금 반환]

1. 교육비용은 매 1회를 기준으로 일금 200,000원으로, 총 12회 일금 2,400,000원으로 한다. 단, 교육비는 교육을 수료한 후, 후불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자비로 교육비를 납부한다. 단, "을"은 다음 각 호에 동의함을 조건으로 "갑"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① "을"은 지원자인 "갑"으로부터 교육지원금을 수취한 시점으로부터 계약 기간을 3년 유지한다.

지원금 잔액은 교육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로부터 이 지난 시점에 완전히 정산된다.

② "을"이 약속한 근속기간을 이행하지 못한 채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아래 표의 약정 비율만큼 교육비 지원금을 반환한다.

|       |     |     |     |
|-------|-----|-----|-----|
| 반환 비율 | 90% | 60% | 30% |
|-------|-----|-----|-----|

다. 원고는 2018. 12. 3.부터 2018. 12.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에 따라 지원금으로

2,400,000원(= 200,000원 × 12회)을 지원하였다.

라. 이 사건 미용실은 선불권(정액권 및 회원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방문 고객이 특정 헤어디자이너를 지정하여 선불권을 구매하면, 지정된 헤어디자이너는 선불권의 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고객이 매장을 방문할 때마다 위 고객에 대한 미용시술을 전담하게 되고, 미용시술에 대한 요금 납부는 선불권 잔액 범위 내에서 시술가격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마. 원고는 2019. 1. 1.경 피고와 사이에 업무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각 지칭한다).

#### 제8조 [봉사료 및 소득 배분율]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고객이 지불을 결정해 주신 봉사료 금액 전부를 받는다.
2. 소득배분율은 제8조 1항 외에 추가로 "갑"이 "을"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비율이다.

|                     |     |                      |
|---------------------|-----|----------------------|
| 1,000 미만            | 29% | 순매출의 20%(부가세 10% 제외) |
| 1,000 이상 ~ 1,100 미만 | 32% |                      |
| 1,100 이상 ~ 1,200 미만 | 33% |                      |
| 1,200 이상 ~ 1,300 미만 | 33% |                      |
| 1,300 이상 ~ 1,400 미만 | 33% |                      |
| 1,400 이상 ~ 1,500 미만 | 34% |                      |
| 1,500 이상 ~ 1,600 미만 | 35% |                      |
| 1,600 이상 ~ 1,800 미만 | 36% |                      |
| 1,800 이상 ~ 2,000 미만 | 37% |                      |
| 2000 이상             | 40% |                      |

#### 제15조 [선불권의 의미 및 정산방법]

1. 선불권은 고객이 선불로 지불한 헤어 시술권을 말한다.
2. 선불권의 사용은 원칙상 지정된 디자이너에게 우선권이 있다.
3. 선불권은 당월 1일~말일까지의 결제된 금액을 익월 수수료 지급일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4. 선불권의 금액 중 고객이 결정해 주신 봉사료의 금원을 지불한다. 이는 선지급수수료이다.

6. 디자이너 퇴사 시 잔여 선불권 금액의 선지급 수수료는 반환한다.

7. 단, 선지급이 아닌 시술된 부분에 대해 지급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촉계약에 따른 정산방법에 따라서 2019. 5.까지의 선불권 판매 수수료를 월별로 지급하였다.

사. 피고가 퇴사한 2019. 6. 22. 기준 원고가 이 사건 업무위촉계약에 따라 피고 이름으로 결제된 선불권의 수수료를 피고에게 선지급하였으나 피고가 퇴사하여 피고를 담당 헤어디자이너로 한 선불권 잔액에 대하여 미용시술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한 잔여 선불권 금액의 선지급 수수료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71,728원이고, 미수금은 2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갑 제1호증에 대하여 피고의 서명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피고는 강박에 의하여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에 따라 교육지원금으로 2,400,000원을 지원해 주었으나 피고가 1년 이내에 퇴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에 따라 2,160,000원(= 2,400,000원 × 9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사당시 발생한 선지급 수수료 2,048,872원과 미수금 20,000원의 합계인 2,068,872원(= 2,048,872원 + 2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원 합계 4,228,872원(= 2,160,000원 + 2,068,872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기변제한 1,000,000원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소득액 851,382원의 합계인 1,851,382원(= 1,000,000원 + 851,382원)을 공제한 나머지 2,377,490원(= 4,228,872원 - 1,851,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판단

피고가 2018. 12.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에 따라 지원금 2,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가 2019. 1. 4.부터 2019. 6. 22.까지 이 사건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에 따르면 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지원받은

교육비 중 90% 상당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술교육계약에 따라 2,160,000원(= 2,400,000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기술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기술교육 수료증을 교부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촉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잔여 선불권 금액이 위 표 '합계' 기재와 같이 2,071,728원이고 미수금이 2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851,382원을 변제받았거나 공제해야 함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377,490원[= (위 2,160,000원 + 위 잔여 선불권 금액 2,071,728원 중 원고가 구하는 2,048,872원 + 미수금 20,000원) - 1,851,3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조윤정**

**판사홍준서**

**판사권현영**

**별지**